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매매피해자등의 주거 자립 절차 지원〉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80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성매매피해자등의 주거 자립 절차 지원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2인
2. 제 안 일 : 2025. 4. 14.
3. 회 부 일 : 2025.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원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성매매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 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성매매피해자등의 주거 자립 절차 지원

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등¹⁾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의 장이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을 성매매피해자등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조의2(성매매피해자등의 주거 자립지원) ①</u> <u>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성매매피해자등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u> <u>②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u>

현행법²⁾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숙박 제공 및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외국인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년 1월 기준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은 총 47개이고
2024년 지원시설에서 지원한 인원은 924명으로 나타남.

<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현황 및 지원인원 >

(단위: 개소, 명)

구 분	시설 수	지원인원
일반 지원시설	23	469
청소년지원시설	12	329
외국인지원시설	1	79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1	47
계	47	924

주: 시설 수는 2025년 1월 기준, 지원인원은 2024년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현재 성매매피해자들은 지원시설을 통한 숙식 제공 외에 국가 차원에서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없는 상황³⁾임.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등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한 사항을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생계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6곳: 파주, 평택, 원주, 아산, 여수, 창원

구분	지자체	지원내용			비 고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경기	평택	월100만원(1년), 동반자녀(18세미만) 월10만원(1년)	1,000만원	월30만원(1년)	
	파주	월 100만원(2년), 동반자녀(18세 미만) 월 10만원(2년)	1,400만원	720만원 이내(2년)	자립지원금 500만원
강원	원주	월100만원(1년)	600만원	360만원이내(1년)	
충남	아산	월100만원(1년), 동반자녀 월10만원 (1년, 최대3인)	600만원		
전남	여수	월100만원(1년)	700만원	월30만원(1년)	
경남	창원	월100만원(1년), 동반자녀(18세미만) 월10만원(1년)	700만원	360만원이내(1년)	

자료: 여성가족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도 성매매피해자등은 성폭력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성매매피해자등이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등 다른 대상자 요건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나 그 외에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일반공급을 신청할 자격을 가짐.

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등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입소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지원시설의 장의 피해자 대리와 관련(안 제9조의2제1항)

성매매피해자등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지구 철거민 등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을 받을 수 있음. 즉, 성매매피해자등 중 일부에게만

4)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다른데, 예컨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등이 우선공급 대상자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⁶⁾시 입주자 모집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계한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모집 현황(2022년~2025년 1월)⁸⁾을 보면, 총 공급신청 신청인 중 인터넷 접수자

-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7) 실무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위임장 서식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일부 지방공사는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음.
- 8)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모집 현황(2022년~2025년 1월말)>
 (단위: 신청인 수, %)

연번	사업명	공공임대주택 유형	공급 세대수	모집기간	인터넷	방문 접수	총 신청인 수
1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통합공공임대주택	605	'22.02.15.-02.18.	17,936	1,282	19,218
					(93.3)	(6.7)	(100)
2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575	'22.02.15.-02.18.	11,888	777	12,665
					(93.9)	(6.1)	(100)

가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인터넷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⁹⁾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는 타인의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면서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원시설의 장이 본인인증절차를 포함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주거복지 관련 지원업무 의뢰 관련(안 제9조의2제2항)

개정안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지원시설의 장이 「장애인·고령자 등

3	행정중심 복합도시 6-3UR1BL	통합공공 임대주택	200	'24.04.11. -04.15.	181	-	181
					(100)	-	(100)
4	행정중심 복합도시 6-3UR2BL	통합공공 임대주택	216	'24.04.11. -04.15.	1,348	6	1,354
					(99.6)	(0.4)	(100)
5	과주운정3 A24	국민 임대주택	806	'24.05.20. -05.24.	1,510	233	1,743
					(86.6)	(13.4)	(100)
6	인천검단 AA35-2	국민 임대주택	593	'24.06.25. -06.28.	1,627	62	1,689
					(96.3)	(3.7)	(100)
7	행정중심 복합도시 6-3M4BL	통합공공 임대주택	159	'24.08.09. -08.13.	181	-	181
					(100)	-	(100)
8	서귀포대정	통합공공 임대주택	37	'24.09.11. -09.12.	605	10	615
					(98.4)	(1.6)	(100)
9	평택고덕 국제화계획 A-58	국민 임대주택	378	'25.01.13. -01.17.	2,899	100	2,999
					(96.7)	(3.3)	(100)

주 1: 가장 최근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9) 본인인증절차는 인터넷상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체적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의 장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약자법」 10)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센터는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거기본법」 제22조11)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피해자가 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지원시설과 연계시켜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자립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나,

주거지원센터는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센터는 센터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시설의 장의 의뢰가 없어도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가 지침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지원시설 퇴소 시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위치 등과 관련한 정보를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국토교통부는 제9조의2제1항의 경우 성매매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가 없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9조의2제2항의 경우 성매매피해자는 주거약자에 해당

-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되지 않고 「주거기본법」의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 상담 등을 지원하면 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어 주거지원센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